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1. 19. ~ 1. 28.(10일간)

<2026. 1. 28.(수) 10:00 제2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목 차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심사결과	페이지
1	9-729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수정가결	1
2	9-747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길용 의원	수정가결	15
3	9-748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원안가결	22
4	9-749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5
5	9-750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	원안가결	26
6	9-751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28
7	9-73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조미선 의원	부결	30
8	9-752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2
9	9-753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원안가결	34
10	9-757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원안가결	36
11	9-755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기획예산과)	부결	37
12	9-756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9
13	9-739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가족보육과)	원안가결	40
14	9-723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오산시장 (도시정책과)	부결	42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29호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14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1. 14.
- 나. 제출자 : 이상복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6. 1. 1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성길용 의원)

-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기준을 완화하고 변속차로 기준을 단일화하여 도로규모와 이용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로연결 허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유연한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완화(별표 4)
-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 단일화(별표 5)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의 제한거리 완화와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완화를 통해 규제 부담을 없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계에서는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으며, 중소기업 ombudsman은 지난 2023년 11월 변속차로 기준 완화를 건의한 바도 있음. ([보도자료-중기ombudsman] 변속차로 기준 완화 건의_231127 참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의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및 변속차로 기준이 상당히 완화됨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발의 : 성길용 의원(대표발의)

수정이유

-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도로 연결 제한거리 및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수정함.

주요골자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현행대로 하고, 도로모서리 곡선화로서 변속차로를 대체하는 경우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적용 제외토록 예외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호 및 별표 4)
- 승차구매점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 신설 (안 별표 5)

수정안 : 별첨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성길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729-1호 (원안 9-729)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6일

발의의원 :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

수정이유

-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도로 연결 제한거리 및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수정함.

주요골자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현행대로 하고, 도로모서리 곡선화로서 변속차로를 대체하는 경우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적용 제외토록 예외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호 및 별표 4)
- 승차구매점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 신설 (안 별표 5)

수정안 : 별첨

【별첨】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거나”를 “해당하거나, 별표 5의 제1호라목, 제1호바목, 제1호사목, 제2호마목, 제2호사목 중 도로모서리 곡선화(곡선반지름 6m)로서 변속차로를 대체하는 경우, 또는”으로 하고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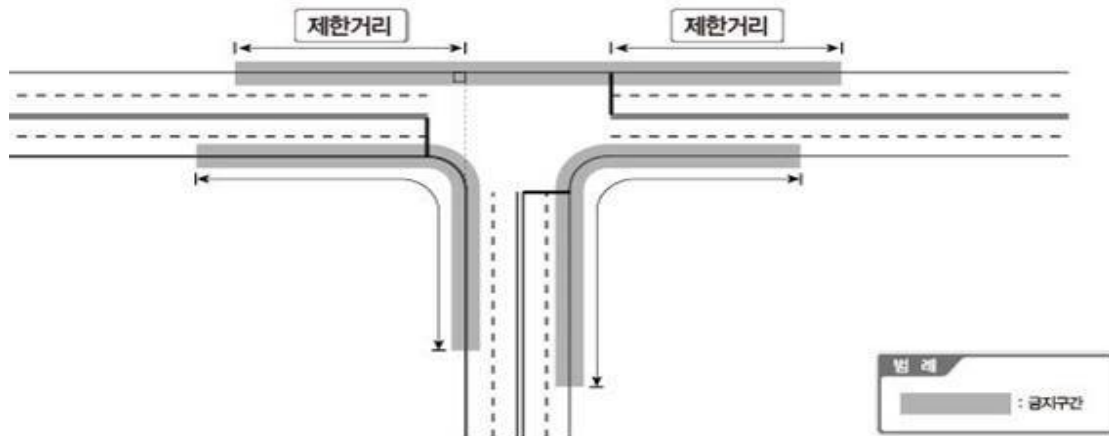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의 정지선 및 곡선부를 포함한 교차 영역으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도시 지역	비도시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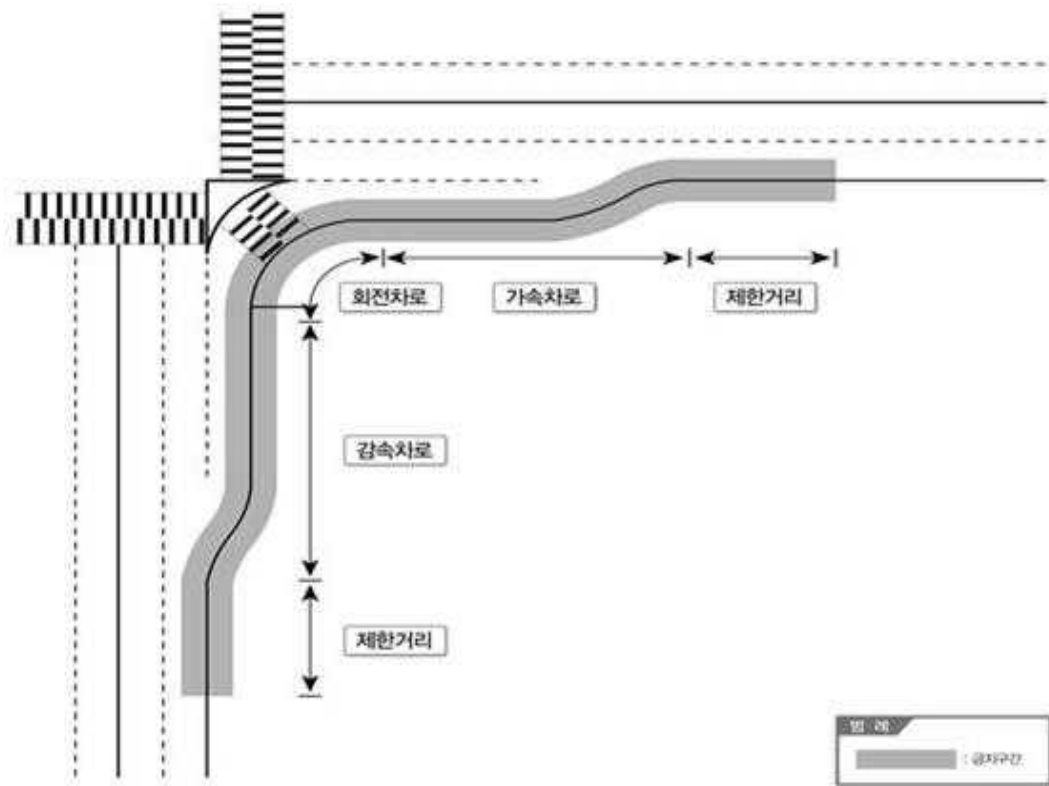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 (미터)	10	2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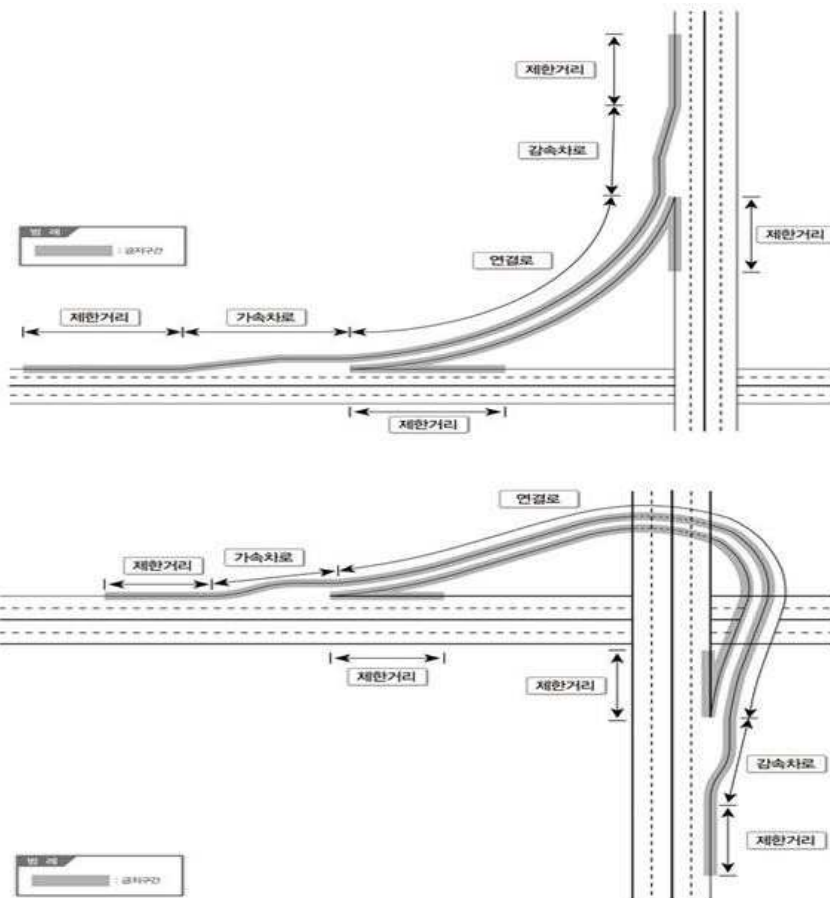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 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 차로	테이퍼	가속 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30 (15)	10 (5)	45 (20)	10 (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30 (15)	10 (5)	45 (20)	10 (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 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 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21대 이상 50대 이하	20 (15)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5(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 ·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 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사. 공장·숙박시설·업무 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101가구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차. 승차구매점	2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21대 이상 50대 이하	20 (15)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5(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30 (15)	10 (5)	60 (30)	20 (1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30 (15)	10 (5)	60 (30)	20 (1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0 (10)	10 (5)	40 (20)	15 (1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교통용 통로 등	-	15 (10)	10 (5)	30 (15)	15 (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6대 이상 10대 이하	15 (10)	10 (5)	30 (15)	15 (10)
	11대 이상 30대 이하	20 (10)	10 (5)	45 (20)	15 (10)
	31대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 ·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집 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20 (10)	10 (5)	40 (20)	15 (10)
	31대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 설·근린생활시설 및 기 타시설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6대 이상 20대 이하	15 (10)	10 (5)	30 (15)	15 (10)
	21대 이상 50대 이하	20 (10)	10 (5)	45 (20)	15 (10)
	51대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20 (10)	10 (5)	40 (20)	15 (10)
	(101가구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차. 승차구매점	10대 이하	15 (10)	10 (5)	30 (15)	15 (10)
	11대 이상 30대 이하	20 (10)	10 (5)	45 (20)	15 (10)
	31대 이상	30 (15)	10 (5)	60 (30)	20 (10)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항목부터 항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10. (생 략)</p>	<p>제2조(정의) ----- ----- -----</p> <p>1. 10. (현행과 같 음)</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p> <p>1. 10. (현행과 같 음)</p> <p><u>11. “승차구매점”이란</u> <u>차(「도로교통법」</u> <u>제2조제17호가목에</u> <u>따른 “차”를 말한다.</u> <u>이하 같다)에 승차</u> <u>한 상태로 하차하</u> <u>지 않고 「상법」</u> <u>제46조에 따른 상</u> <u>행위(이하 “승차구</u> <u>매”라 한다)를 하는</u> <u>점포를 말한다.</u></p>
<p>제6조(연결허가의 금 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 간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p>	<p>제6조(연결허가의 금지 구간) ----- ----- ----- ----- ----- ----- -----</p>	<p>제6조(연결허가의 금지 구간) ----- ----- ----- ----- ----- ----- -----</p>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47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성길용 의원

찬성의원 : 전도현, 송진영 의원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1. 8.
- 나. 제출자 : 성길용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6. 1. 1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성길용 의원)

-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학길 동행도우미 사업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학길 동행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통학도우미 지원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 업무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학길 동행도우미’는 통학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집에서 학교까지

정해진 통학로를 동행하며 교통사고 위험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 부천, 하남, 서울 성동구 등에서 ‘워킹 스쿨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일부 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인력과 최대 규모인 5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남시는 자원봉사자로 근무자를 구성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등, 동행도우미의 배치 및 운영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전승완 기자, “성동구,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 실시”, 매일일보, 2024.02.29. 참고)

(추정현 기자, “워킹스쿨버스 확대해야”, 인천일보, 2025.12.09. 참고)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발의 : 성길용 의원(대표발의)

수정이유

- 통학길 동행도우미 사업의 통학 범위를 구체화하고 동행도우미 배치 및 운영기준을 학교별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함

주요골자

- 통학로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통학길 동행도우미 관련 배치 및 운영기준 규정 정비(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을 구체화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적용 범위 확대(안 제6조)

수정안 : 별첨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성길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747-1호 (원안9-747)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26일

발의의원 :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

수정이유

- 통학길 동행도우미 사업의 통학 범위를 구체화하고 동행도우미 배치 및 운영기준을 학교별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함

주요골자

- 통학로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통학길 동행도우미 관련 배치 및 운영기준 규정 정비(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을 구체화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적용 범위 확대(안 제6조)

수정안 : 별첨

【별첨】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등·하교 노선을”을 “통학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학로”란 「통학생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을 “(운영·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통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배치 및 운영기준은 제5조에서 규정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정하며, 학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학교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단체,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에 통학길 동행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 “관련기관”을 “학교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중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통학길 동행도우미"란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u>등·하교 노선</u>을 따라 통학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3.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 <u>통학</u> <u>로를</u> ----- -----.</p> <p>2.·3. (제정안과 같음)</p> <p>4. "<u>통학로</u>"란 「<u>통학생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u>를 말한다.</p>
<p>제4조(운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u>통학길 동행도우미는 통학지도사 1명당 통학생 5명 내외로 운영한다.</u></p> <p><신설></p> <p><u>②·③</u> (생략)</p>	<p>제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통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u>② 배치 및 운영기준은 제5조에서 규정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정하며, 학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u>③·④</u> (제정안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신 설>

⑤ 시장은 학교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단체,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에 통학길 동행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

학교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 주민 ---.

제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6조(준용)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48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8.

나. 제출자 : 전도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도현 의원)

○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조직·직제 개편이나 정원 증원 등이 곧바로 보조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관리 및 통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인건비 목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조직·직제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의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의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직제, 인사, 보수 조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기구 및 정원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은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의2 ①) 먼저, 직제 및 인사 등의 조정 시 협의 의무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보조금법」 제14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보조사업자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의 사례를 보면,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조사업자의 직제·인사 운영에 대해 주무부처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제 등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대한체육회 정관 제59조 참조)
- (안 제6조의2 ②) 다음으로,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및 집행기관과 의결기간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원칙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 집행 이후에는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보조사업의 내용, 규모 및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의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는 해당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조례안의 의회 제출 규정은 지방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전적·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협의 결과를 제출받는 수준의 소극적·사후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법령 체계 및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49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전예슬 의원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8.

나. 제출자 : 전도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도현 의원)

○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강좌 특성에 따른 수강료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
적이고 탄력적인 강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오산문화원 문화강좌 수강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0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송진영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전예슬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8.

나. 제출자 : 송진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송진영 의원)

○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으로 온라인상 시민의 인권 침해와 2차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 및 신고체계 마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위법인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과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송진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1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송진영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전예슬 의원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1. 8.
- 나. 제출자 : 송진영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6. 1. 1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송진영 의원)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영양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영양·식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1)에서 위임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30호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14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14.

나. 제출자 : 조미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1. 25.

라. 심사일자

- 제298회 조례특위 제1차 (2025. 1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1차 (2026. 1. 26.) :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조미선 의원)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관련 규정 및 별표 18 삭제 (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18)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

항으로, 결과적으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용도용적제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제도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방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거용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임.
-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도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커뮤니티시설(학교, 문화시설 등) 부족 문제와 일조권 및 기존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오산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2003년 9월에 처음 신설되었음.
- 도입 초기에는 계획적인 개발 유도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업지역의 기능과 수요가 크게 변화하면서 상가공실과 상권슬럼화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주택 공급환경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용도용적제는 고밀 개발을 막아 도시 효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음.
-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 도시 기능의 목적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심 공동화 심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함.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2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8.

나. 제출자 : 조미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조미선 의원)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3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전예슬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전도현, 송진영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8.

나. 제출자 : 전예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예슬 의원)

○ 예산 또는 기금의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의원 발의 의안까지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8조제1항)

○ 의원 발의 의안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사 시로 규정함

(안 제11조제2항)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의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현행 시장에서 시의원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그 의안 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미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또는 기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현재 시장 제출 조례안에 국한된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를 의원 발의 조례안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7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조미선 의원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8.

나. 제출자 : 이상복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제안이유(제안설명 : 조미선 의원)

○ 조례 입안·검토 및 정책자료 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 의회사무과장 하부에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두도록 규정함
(안 제1조의2)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규칙안은 조례 입안·검토 및 정책자료 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55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9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1. 9.
- 나. 제출자 : 오산시장
- 다. 회부일자 : 2026. 1. 1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예산과장)

-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혼남녀의 결혼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관내 인구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결혼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결혼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미혼남녀의 결혼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자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중 성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서울, 경기도를 포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를 개선하기 위해 관

내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 등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대체로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요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결혼지원금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저출산·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혼인 건수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속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일부 있음.
- 본 조례안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지원 대상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효과성, 유사한 결혼 장려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참여자에 대하여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진주시(100만원 이내의 축하상품권), 사천시(100만원 추가 지원), 부산 사하구(소득에 따라 최대 2,000만원) 등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아울러,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및 2025년 성혼자에 대해서도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지원대상의 적정성, 구체적 기준에 대한 조례 명시 필요성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함.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56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9일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9.

나. 제 출 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예산과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과의 기능 및 책임 강화와 감사·예산·조례 등 고난도 의정 수요 증가로 인한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및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증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개정 : 904명 → 905명 <증1> (안 제21조)

- 집행기관의 정원 : 88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22명 <증1>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및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의견없음.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39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9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9.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1. 1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교육국장)

-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입양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안 제3조제1항)
 - 첫째 아이 : 100만원
 - 둘째 아이 : 200만원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신청방법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장려금 지원 절차 규정 (안 제6조)

- 장려금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 2026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적용 (부칙 안 제2조 적용례)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첫째아 및 둘째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산장려금을 인상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가 개정될 경우 지난해 7.6억이던 출산장려금 예산이 '26년 22.8억을 시작으로 '29년에는 26.4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며
- 경기도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아의 경우 500만원(양평, 1개), 200만원(안양, 1개), 100만원(고양 외, 16개), 70만원(광명, 1개), 50만원 이하(용인 외, 7개) 으로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시군(16개 시군)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아의 경우는 200만원(고양시 외, 6개)과 100만원(수원시, 7개)을 지원하는 시군이 가장 많음.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안 번호	제9-723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11월 17일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14.

나. 제 출 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5. 11. 25.

라. 심사일자

- 제298회 조례특위 제1차 (2025. 11. 2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1차 (2026. 1. 26.) : 축조심사
- 제2차 (2026. 1. 2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도시주택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 추가 신설 및 단서 조문 개정 (안 제17조)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의 근거법령 수정 (안 제50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중 주민 재열람공고 대상 조항 신설 (안 제50조의2)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함.